

조선총독부관보(朝鮮總督府官報) 제1794호(號) 1932(昭和 7)년 12월 29일 목요일

○ 고 시(告示)

조선총독부고시(朝鮮總督府告示) 제691호(號)

조선국유철도 화물운임(朝鮮國有鐵道貨物運賃)에 대하여 아래[左]와 같이 할인(割引)함.

1932(昭和 7)년 12월 29일 조선총독(朝鮮總督) 우가키 가즈시게(宇垣一成)

- 1 품 명(品 名) 청어[鮮鯿]
- 2 발 역(發 驛) 부산(釜山), 포항(浦項)
- 3 착 역(著 驛) 구마산(舊馬山), 마산(馬山), 군북(群北), 진주(晉州)(이상[以上] 포항발[浦項發]에 한[限]함) 및 대전(大田) 위쪽[以遠]의 국선(局線) 및 연대선(連帶線) 각(各) 역(驛)
- 4 급종별(扱種別) 차급(車扱)
- 5 임 륜(賃 率) 4천 톤(噸) 이상(以上)
조선총독부철도(朝鮮總督府鐵道) 국선(局線) 내(內) 보통임륜(普通賃率)의 1할(割)5푼(分) 감(減)
6천 톤(噸) 이상(以上)
조선총독부철도(朝鮮總督府鐵道) 국선(局線) 내(內) 보통임륜(普通賃率)의 2할(割)5푼(分) 감(減)
- 6 기 간(期 間) 1933(昭和 8)년 1월 1일부터
1933(昭和 8)년 4월 15일까지
- 7 기 사(記 事) 가 소정임륜(所定賃率)에 의(依)하여 본(本) 특정구간(特定區間) 통계(通計) 전기(前記) 수량(數量) 이상(以上)을 탁송(託送)한 것에 대(對)하여 기수운임(既收運賃)과 본(本) 임륜(賃率)에 의(依)한 운임(運賃)과의 차액(差額)을 환급(還給)하는 것으로 함.
나 특별톤급(特別噸扱)에 의(依)하여 출하(出貨)한 수량(數量)은 전호(前號)의 수량(數量)에 가산(加算)하는 것을 득(得)함.
다 본(本) 화물(貨物)에 대(對)한 운임계산(運賃計算) 최저톤수(最低噸數)는 20톤(噸)으로 함.
라 본(本) 임륜(賃率)의 적용(適用)을 받고자 하는 사람[者]은 매월(每月) 아래[左]에 게시(揭示)한 양식(樣式)의 운임조서(運賃調書)를 조선총독부 철도국 영업과(朝鮮總督府鐵道局營業課)에 제출(提出)하는 것으로 함.

